



22

쓰웨이실업(선전)유한공사, 쓰웨이기업 주식유한공사와 아이리(광주)유한공사, 아이리(쿤산)유한공사, 아이리(중국)유한공사, 남해시 리수의리 인쇄공장, 푸산시 환쓰전 동승분강 인쇄공장 경영부 간의 상업비밀침해 분쟁 관할권 이의 상소 사건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최고인민법원	사건번호	(2007)民三终字第10号
판결 일자	2009년 1월 15일	판결 결과	상소인용(권리자 패)
원심원고(피상소인)	1. 쓰웨이기업 주식유한공사, 2. 쓰웨이실업(심천)기업주식 유한공사		
원심피고(상소인)	1. 아이리 테니스 공사, 2. 아이리(광주) 유한공사, 3. 아이리(쿤산) 유한공사, 4. 아이리(중국) 유한공사, 5. 남해시 리수의리 인쇄공장, 6. 푸산시 환쓰전 동승분강 인쇄공장 경영부 (5, 6은 상소하지 아니함)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2조, 제29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약간의 의견 제33조, 최고인민법원 경제심판업무에서 민사소송법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약간의 규정 제2조		
영업비밀	유화형 아크릴 PSA 접착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		
키워드 (Keyword)	관할권(管辖权), 입안시간(立案时间), 제조지(制造地), 판매지(销售地)		

02 사건 개요

원심 원고들은 2004년 4월 8일 원심 피고들에 대해서 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침해상품을 판매한 곳인 광둥성 불산시 중국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민폐 6,000만 위엔의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2004년 5월 17일 광둥성 불산시 중국인민법원은 사건을 입안하였고, 원심 원고들은 같은해 11월 29일 및 2005년 4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손해배상청구금액을 확장하였다. 광둥성 불산시 중급인민법원은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에 지시를 요청하며, 해당사건을 고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구하였다.

이와 별도로, 원심 피고들은 원심 원고들에 대하여 자신의 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강소성 고급인민법원에 기소를 제기하였고, 강소성 고급인민법원이 2004년 10월 13일 해당 사건을 수리하였다. 강소성 고급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이 같은 법률사실을 기반으로 발생한 분쟁이라 생각하고, 광둥성 불산시 중급인민법원의 사건 입안시간이 강소성 고급 인민법원보다 빠르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였다(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약간의 의견 제33조, 최고인민법원 경제심판업무에서 민사소송법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약간의 규정 제2조).

원심의 답변 기간에 원심 피고들은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심 법원은 관할권 이의를 기각하고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 피고들이 상소를 제기한 것이다.

03 주요 쟁점

원심 원고(피상소인)	⇒	⇐	원심 피고(상소인)
침해상품 판매지가 침해지에 해당한다.			침해상품 판매지는 침해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광둥성 불산시 중급인민법원과 강소성 고급인민법원의 입안시간을 비교하여야 한다.			광둥성 불산시 중급인민법원은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악의적인 소송문제와 본 사건은 관련이 없다.			본 사건이 강소성 고급인민법원으로 이송되어야 원심 원고의 악의적인 소송 음모를 방지할 수 있다.

04 판결 요지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업비밀을 침해하여 제조한 권리침해상품의 판매는 해당 법이 규정한 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리수의리 인쇄공장과 분강 경영부가 고소당한 상업비밀을 침해하여 제조한 권리침해상품의 판매행위는 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광둥성 불산시 중급인민법원은 리수의리 인쇄공장과 분강 경영부의 상업비밀을 침해하여 제조한 권리침해 상품의 판매를 이유로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

상업비밀을 사용하는 과정은 대부분 권리침해 상품을 제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민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광둥성 불산시 중급인민법원은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도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 본 사건은 강소성 고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병합심리 하여야 마땅하다.

05 Key Point

중국은 국토가 넓고, 지역 유착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 되기 때문에, 관할 문제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관할 다툼에 관한 판례도 상당히 많다. 상업비밀 침해 사건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관할의 원칙이 적용된다.

중국 부정당경쟁법에 의하면, 상업비밀을 침해하여 제조한 권리침해상품의 '판매'는 해당 법이 규정한 상업비밀침해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본 판결은 '상품 판매지'를 침해행위지로 보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한국 부정경쟁방법 법제에 의하면, 타인의 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하여 상품을 제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침해행위로 보고, '상품 판매지'에도 소송 관할권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